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7
----------	-------

발의연월일 : 2019. 7. 18.

발의자 : 이정미 · 여영국 · 추혜선

심상정 · 윤소하 · 송옥주

이상돈 · 민홍철 · 김종훈

박선숙 · 김종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생략)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p>
<p>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신 설>

② ~ ⑤ (생 약)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 ⑤ (현행과 같음)